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한 국 수 화 언 어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「한국수화언어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83호, 2022. 1. 18. 공포, 7. 19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(제11조의2 신설)

- 1)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”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수어통역 지원 등) 법 제16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기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
3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
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수어통역 지원 등) 법</u> <u>제16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</u> <u>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</u> <u>우를 말한다.</u> <u>1.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</u> <u>법」 제14조에 따라 설치·운</u> <u>영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</u> <u>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</u> <u>련된 주요 사항을 언론에 발</u> <u>표하는 경우</u> <u>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</u> <u>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</u> <u>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</u> <u>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</u> <u>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</u> <u>대응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</u> <u>는 기구에서 감염병의 예방</u> <u>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</u> <u>언론에 발표하는 경우</u> <u>3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장이 국민의 경제 및 생</u> <u>활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언</u> <u>론에 발표하는 경우</u>

	<u>4.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538